<신구 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제 1조 ~ 제 4조 <생 략>	**제 1조 ~ 제 4조** <좌 동>	
제 5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 금액은 20만원 이하입니다. (0원 신규 가능)	**제 5조 가입금액** **이 예금의 가입 금액은 30만원 이하입니다. (0원 신규 가능)**	가입금액 변경
제 6조 적립방법 및 적립한도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10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적립이 가능합니다. 단,「장병내일준비적금」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40만원이며,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 20만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.	**제 6조 적립방법 및 적립한도** **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10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적립이 가능합니다.** **단,「장병내일준비적금」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55만원이며,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 30만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.**	적립한도 변경
제 7조 ~ 제 11조 <생 략>	**제 7조 ~ 제 11조** <좌 동>	
제 12조 제한사항 ①~② <생 략> <신 설>	**제 12조 제한사항** ①~② <좌 동> **③ '25.1.1까지 가입한 계좌는 1회에 한하여 비과세 저축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** **단, '25.1.1까지의 비과세저축 한도변경 이력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** **④ 이 예금의 신규일이 '25.1.2이후인 계좌는 비과세저축 한도변경이 불가합니다.** **⑤ 이 예금의 비과세저축 한도는 5만원 단위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.** **단, '25.1.1까지 가입한 계좌는 기존에 설정한 비과세저축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**	비과세저축 관련 제한사항 추가
부칙 <생 략> <신 설>	부칙 <좌 동> **이 특약은 2025년 01월 02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.**	